

거창군 공립어린이집(동동어린이집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8~9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18. 11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거창군 공립어린이집(동동어린이집) 위탁기간(2014.3.5.~2019.3.4.)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7조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(m ²)			보육아동		보육 교직원
		대지	연면적	층수	정원	현원	
동동어린이집	거창군 거창읍 중앙로2길 19	568	239	지상1	47	26	6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어린이집 운영 관리
-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

다. 위탁기간 : 2019. 3. 5. ~ 2023. 3. 4.(5년)

※ 위탁 내역

- 최초 : 1999. 3. 5. ~ 2002. 3. 4.
- 2회 : 2002. 3. 5. ~ 2005. 3. 4.
- 3회 : 2005. 3. 5. ~ 2008. 3. 4.
- 4회 : 2008. 3. 5. ~ 2011. 3. 4.
- 5회 : 2011. 3. 5. ~ 2014. 3. 4.
- 6회 : 2014. 3. 5. ~ 2019. 3. 4.

라. 선정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평가·심사 후 결정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

-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·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,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.

나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제24조의 2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- 「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7조(위탁운영)
-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향후계획

-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: 2018. 11월
- 재위탁 신청 접수 : 2018. 11. 26.(월) ~ 11. 30.(금)
 - 재위탁 신청 포기시 변경위탁(공개모집)
- 학부모 만족도 조사 : 2018. 11. 26.(월) ~ 11. 29.(목)
-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정 : 2018년 12월
 - 재위탁 부적격 시 변경위탁(공개모집)
- 위·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: 2019년 1월

라. 예산조치 : 비예산

마. 재위탁 운영계획 : 따로 붙임

- 동동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- 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

◇ 공립 동동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재위탁 방식으로 관련 제반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1 관련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제3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- 「거창군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7조(위탁운영)
-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II 위탁개요

□ 재위탁 대상

시설명	소재지	건립일	규모(m ²)			정원	교직원수	비고
			대지	연면적	층수			
동동어린이집	거창읍 중앙로2길 19	93.11.10	568	239	지상1	47 (현원 26)	6	

□ 현 위탁업체 현황

시설명	원 장	위탁운영체			위탁기간
		위탁체명	대표자	소재지	
동동어린이집	김 순 복 (80.05.21)	(사)거창불교 사암연합회	박구진	거창읍 하동4길 77	2014.3.5.~ 2019.3.4

□ 재위탁 사유 : 위탁약정 기간만료(2019. 3. 4)

□ 재위탁 기간 : 2019. 3. 5. ~ 2023. 3. 4(5년)

□ 재위탁 심사

- 심사기준 :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5개부분 평가(보건복지부 심사기준 표)
 - ①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②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
 - ③ 어린이집 운영계획 ④ 운영체의 공신력 ⑤ 운영체의 재정능력
- 심사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·심사 후 결정

□ 재위탁 추진절차

① 군의회 동의	② 재위탁 신청접수	③ 1차 사전 서류검토	④ 2차 면접심사 보육정책위원회	⑤ 재위탁 결정
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-동의안 제출	재위탁신청접수 -재위탁 신청서 접수 학부모 만족도조사 -설문지 통한 조사	1차 심사자료 검토 -위탁서류 검토 -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(위탁체 대표자 및 원장)	2차 종합적 심사 -질의응답 -면접심사 -위원간 토의 -세부항목 심사	재위탁 결정 -심사기준표의 배점에 따라 재위탁 결정

Ⅲ 세부추진계획

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-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: 2018. 11월 임시회

□ 재위탁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11. 23. ~ 11. 29.
 - 재위탁신청 포기시 변경위탁(공개모집)으로 추진
- 제출서류 : 위탁신청서, 위탁체 관계서류,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, 원장 관계서류,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
- 재정능력 관련서류는 2018. 9월 30일 기준으로 접수

□ 학부모 만족도 조사

- 기 간 : 2018. 11. 26. ~ 11. 29.
- 대 상 : 동동어린이집 이용아동 학부모
- 조사방법 :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조사
 -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대상 설문지 배부

□ 재위탁 심사

- 심사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심사 후 결정
- 심사기준 :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5개부분 평가(보건복지부 심사기준 표)

심사항목(5개부분)	점수(100점)	세부항목(12개항목)
1.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	35	- 시설운영 관리, 보육사업실적, 회계 - 학부모 만족도 조사
2.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	20	- 평가인증, 보육경력 -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, 열의, 태도, 운영계획 등
3. 어린이집 운영계획	30	- 보육사업계획, 운영 및 관리계획, 예산의 적절성 등
4. 운영체의 공신력	10	- 공신력, 지도점검, 지적사항 실태 등
5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-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

○ 심사방법 및 결정

-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
-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, 평균점수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
- 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개별 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
-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(공개모집)으로 추진

□ **보육정책위원회 개최**

- 일 시 : 2018. 12월 중
- 장 소 : 군청 중회의실
- 참석대상 :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12명

□ **위탁 계약 체결 : 2019. 1월 중**

- 재위탁 기간 : 5년

IV 기대효과

-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으로써,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

관 계 법 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4조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1.6.7.>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1.17., 2011.6.7., 2011.8.4.>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 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1.12.8.>
-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1.12.8.>
 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 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1.12.8.>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 <신설 2010.7.9., 2012.8.3.>
-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7.9., 2011.12.8.>
- ⑦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9., 2010.7.9., 2011.12.8.>
-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,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0.7.9., 2011.12.8.>
 - 1. 변경 사유서
 - 2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-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0.7.9., 2011.12.8.>

□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

제7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(개정, 단서삭제 2012.11.28)

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, 수탁취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03.29>

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(이하 "보육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(2016.9.28.)

④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운영기간)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(전문개정 2012.11.28.후단삭제 2016.9.28.)

□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